
「성북구 자원순환 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
순환체계 구축 연구용역」
과 업 지 시 서

2023. 04.

성 북 구 의 회

성북구 자원순환 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 연구모임

1. 과업개요

가. 과업명 : 『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
연구용역』

나.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4개월

다. 사업비 : 금2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※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별첨

2. 과업목적

가.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. 성북구 자원순환 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정책과 정합성을 높여 체계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 방향을 설정

나.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분석해 성북구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을 점검

다.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성북구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

3. 과업범위 대상 및 내용

가. 과업 범위 : 서울특별시 성북구

나. 과업 내용

-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성북구 특성 및 현황 분석
- 성북구 현황 및 사회지표조사 (폐기물 처리 만족도) 결과 분석
-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주 영향요인인 △ 동별 인구밀도, △ 동별 주거형태, △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북구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
- 관련 법제도 분석
- 상위법과 성북구 조례의 정합성 분석

- 타 자치단체 자원순환 관련 우수 조례 분석으로 성북구 조례 정비안 제시
-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 상황 점검
-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, 성북구에서 수립, 진행해야 하는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(2018-2022)에 대한 점검 및 2023-2027 계획 활동 내용 점검
- 성북구 사업 분석
 - 성북구 자원순환 관련 사업 예산 및 내용,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
 - 성북구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분 확보 가능 여부 검토
- 기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

4. 과업의 수행

가. 과업보고

- 착수보고 (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) : 과업수행계획 수립·보고
 -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, 과업 세부수행 계획 및 기타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사항 등
- 중간보고 : 1회 (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)
 -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, 단계별 조사분석 내용을 보고하고, 과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
- 최종보고 : 1회 (계약완료 15일 이내)
 - 최종보고는 관련부서 등 협의, 심의 보완 이후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함

※ 보고회 일정은 성북구의회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나. 성과품 제출

- 규 격 : 별도지정
- 품 목 :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, 결과보고서
-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

※ 모든 성과품의 편집·제작·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○ 작성지침

-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,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,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
-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,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,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

다. 성과품의 소유

-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
-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,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

5. 계약조건

가. 일반사항

- 이 과업지시서는 『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』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북구의회 관계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-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및 자료 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
- 과업수행 시 성북구의회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성북구의회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, 필요시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
- 과업내용의 조정, 연구진의 구성, 자문위원 위촉 등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성북구의회와 협의하여야 함

-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(조사원 채용, 조사기간 등) 에 대해 성북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- 과업내용의 오류 또는 미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하며,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내용이라도 성북구의회 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하여야 하며, 별도의 비용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함
- 과업수행 착수 보고 시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
-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북구의회는 과업수행자에게 적극 협의해야 함
-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,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
-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 및 절차이행에 적합하여야 하며,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

나. 기타사항

- 필요한 경우 과업의 추진사항을 책임연구관이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함
-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, 과업내용 및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성북구의회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-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업체(기관)가 감수해야 함

6. 보안 대책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
나.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함

다.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,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

라.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

마.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

바.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